

춘천지방법원 2022. 7. 21 선고 2021나3614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22. 7. 21 선고 2021나36148 판결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. 9. 8 선고 2020가단10300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우영

피고, 항소인 1. E

2. F

3. G

4. H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동헌

담당변호사 변재휘

변론종결 2022. 6. 23.

판결선고 2022. 7. 21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. 9. 8. 선고 2020가단10300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들은 K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7. 8. 25. 접수 제1749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와 같이 ‘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’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- 피고들은, K가 무자력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,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K가 무자력임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장두봉, 판사 신흥호, 판사 여현주